

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 관한法律 폐지법률안
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
발의자 : 김종희 · 이용주 · 최경환(평)
황주홍 · 유성엽 · 이찬열
조배숙 · 장병완 · 김수민
정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은 인천직할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남구로 정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, 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로 변경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(失效)된 상태임.

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법률 제 호

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 관한法律 폐지 법률안

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 관한法律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